



## 제211회 제2차 정례회 34일간의 일정으로 열려

- 2015년도 세입·세출예산안, 조례안 등 안건 의결 처리



□ 서대문구의회(의장 류상호)는 지난 11월 14일(금)부터 12월 17일(수)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제21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.

□ 먼저, 11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『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기결정의 건』, 『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』 및 『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』 등을 처리하고 이어서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별 구정업무보고가 진행되었다.

□ 또한,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운영위원회·행정복지위원회·재정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 본청, 보건소, 자연사박물관, 동 주민센터(연희동, 홍제2·3동, 흥은2동),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,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부의한다.

□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『2015년도 세입·세출예산안』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치고, 12월 10일부터 12월15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심사를 진행한다. 이어 12월 16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에 관한 질문이 이루어진다.

□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7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위원회가 심사해 부의한 『2015년도 세입·세출예산안』 및 『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』 외 16건 등 여러 안건들을 의결·확정하고 34일간의 정례회 일정의 막을 내리게 된다.

#### [제21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활동사진]



<의회운영위원회>



<행정복지위원회>



<재정건설위원회>



## 서대문구의회,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

□ 서대문구의회(의장 류상호)는 이번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 2차 정례회 기간 중 서대문구청 전 부서, 구의회사무국, 보건소, 자연사박물관, 4개동(연희동, 홍제2·3동, 홍은2동) 주민센터 및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을 대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.

□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서대문구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만큼 초선의원들이 서대문구의 전체적인 행정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, 복지, 안전, 일자리, 재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고 세밀한 자료 검토로 폭넓은 행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에 따른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개선요구는 물론 효율적인 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했다.

□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행정복지위원회는 총 136건(시정요구 78건, 건의사항 44건, 우수장려사항 14건), 재정건설위원회는 총 48건(시정요구 24건, 건의사항 14건, 우수장려사항 10건)을 지적했다.


[2014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]



<행정복지위원회>



<재정건설위원회>

 **서대문구의회,**  
**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**

**- 2015 회계연도 서대문구의회 일반 및 특별회계  
세입·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**

□ 서대문구의회는 11월14일(금) 제 211회 제2차 정례회 제 1차 본회의에서 201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·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였다.



□ 이날 선임된 서대문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장숙이·이진삼·이경선·황춘하·김혜미의원과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박경희·이기돈·서호성·김순길의원 총 9명으로 구성되었고, 곧이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기돈위원을 위원장으로, 김혜미위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하였다.

## 구의원 발의 조례안 제정

### - 제211회 제2차 정례회 구의원 조례 발의

#### [장숙이의원]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

□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시 주변 최초 발견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구 거주 고위험군 환자가족 등 필요한 구민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상황시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.



□ 조례안 제정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책무 규정,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 및 고위험군 환자 가족, 공무원, 통장, 관내 초,중,고 학생등의 교육대상자 지정 및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 등에 관한 지원 사항 등으로 구성됨.